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2. 10. 25 선고 2021가단113018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맥

담당변호사 김진수

피 고 1. B

2. C

소송대리인 D

변 론 종 결 2022. 10. 11.

판 결 선 고 2022. 10. 25.

주 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33,220,399원 및 이에 대한 2022. 2. 5.부터 2022. 10. 25.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 및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B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1. 피고 B은 원고에게 33,220,399원 및 이에 대한 2021. 8. 7.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가. 피고 B와 피고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영업권 및 사업허가권에 관하여 2020. 6. 15. 체결한 양도양수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C은 원고에게 33,220,399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부분 송달일까지는 1)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E’라는 상호로 부산 남구 F 외 2필지에서 가스충전소를 운영한 사람이고, 원고는 액화석유가스의 제조, 충전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8. 6. 1.경부터 2020. 8. 6.경까지 피고 B에게 91,245,399원 상당의 가스를 공급하였다.

다. 피고 C은 2020. 7. 7. 부산광역시 남구청에 지위승계 내용을 ‘양수’, 지위승계 연월일을 ‘2020. 6. 15.’로 하여 부산 남구 F 외 2필지의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허가번호 G), 고압가스 판매사업(허가번호 G), 고압가스 충전사업(허가번호 H), 고압가스 운반자등록(허가번호 G)의 허가 명의를 피고들 공동 명의에서 피고 C으로 변경하는 지위승계신고를 하였다.

라. 피고 C은 2020. 7. 16. 부산 남구 F 외 2필지에서 ‘E’라는 상호로 산업용 가스 제조업, 액화석유가스, 고압가스 등의 도매 및 소매업 등을 종목으로 하여 신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내지 갑 3호증, 을 1,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원고에게 물품대금 91,245,399원에서 원고가 피고 B으로부터 2021. 9. 17.자 및 2021. 12. 27.자 각 상계합의로써 지급받았다고 자인하고 있는

25,025,000원과 33,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33,220,399원(=91,245,399원-25,025,000원-3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분이 피고 B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22. 2. 5.부터 피고 B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선고일인 2022. 10. 25.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가스를 최종적으로 공급한 다음날인 2021. 8. 7.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원고가 공급한 물품의 대금결제일이 물품공급일까지라거나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이전에 피고 B에 대하여 물품대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앞서 인정한 지연손해금을 초과하는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 B은 채무초과 상태였음에도 2020. 6. 15. 피고 C과 사이에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영업권 및 사업허가권에 관하여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고, 사업허가권 명의를 피고 B에서 피고 C으로 변경하였는데, 이러한 양도양수계약은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 B과 친인척 관계에 있는 피고 C의 악의도 추정된다. 따라서 위 양도양수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 C은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33,220,39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별지 목록 기재 사업허가권, 영업권이 독립적인 압류·환가가 가능한지 여부

(가) 별지 목록 기재 사업허가권

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와 수익자 간의 사해행위를 취소함으로써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전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공법상의 허가권 등의 양도 행위가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행정관청의 허가 없이 그 허가권 등을 자유로이 양도할 수 있는 등으로 그 허가권 등이 독립한 재산적 가치를 가지고 있어 민사집행법 제251조 소정의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집행방법에 의하여 강제집행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4. 5. 17.자 2004마285 결정,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10573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액화석유가스법’이라고 한다)에 의하면,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을 하려는 자는 일정 시설기준이나 기술기준을 갖추어 판매소마다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제5조 제2항), 결격사유가 있어서는 아니되며(제7조),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의 지위를 사업이나 저장소의 양도를 이유로 승계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관청이나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하고(제12조 제1항), 허가관청이나 등록관청은 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하며 다만,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자(액화석유가스 저장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자는 제외한다)가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제12조 제4항). 또한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 국세징수법 등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업자 등의 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가 종전의 사업자 등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관청이나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하고(제12조 제2항),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가 수리된 경우 양수인, 액화석유가스 사업자 등의 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그 양수일, 합병일 또는 인수일부터 종전의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의 지위를 승계한다(제12조 제5항).

한편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이하 ‘고압가스법’이라고 한다)에 의하면, 고압가스를 제조(용기 또는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충전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자는 그 제조소마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제4조 제1항), 저장소를 설치하려는 자 또는 고압가스를 판매하려는 자는 그 저장소나 판매소마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제4조 제5항), 고압가스 운반차량을 이용하여 고압가스를 운반하려는 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제5조의4). 또한 결격사유가 있어서는 아니되고(제6조), 사업자들이 그 사업 또는

저장소를 양도한 때에는 그 사업 또는 저장소의 양수인은 그 사업자등의 지위를 승계 하고, 사업자등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관청 · 신고관청 또는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하고(제8조 제1, 2항). 다만 위 승계자에 관하여도 제6조의 결격사유를 준용하여 이 경우 허가를 승계로 본다(제8조 제3항).

위와 같은 관련규정 즉,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고압가스 판매사업, 고압가스 충전사업, 고압가스 운반자 등록을 양수하려는 경우 양수인은 이를 허가관청 · 신고관청 또는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하는 점, 관할관청은 결격사유를 비롯한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하는 점, 사업 허가권이 아닌 ‘사업 자체’를 양도한 경우를 사업자 등의 지위 승계의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점,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 국세징수법 등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에 따른 사업자의 지위 승계 또한 액화석유가스 사업자 명의 변경 자체가 아니라 액화석유가스 사업자 등의 ‘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가 종전의 사업자 등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경우에 가능한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별지 목록 기재 사업허가권을 관할 관청의 관여 없이 당사자가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다고 볼 수 없고, 위 사업허가권은 해당 사업을 합법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 자격에 불과하여 사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 · 물적 시설과는 별도로 그 사업허가권이 독립한 재산적 가치를 가진다고 할 수도 없는바, 별지 목록 기재 사업허가권은 법원이 강제집행의 방법으로 이를 독립적으로 압류하여 환가하기에 적합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나) 별지 목록 기재 영업권

영업은 영업재산과 영업권으로 구성되는데, 영업권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사실관계로서 본래 의미에서의 권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어느 사업을 경영할 권리와 같은 포괄적 재산은 강제집행의 목적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며, 상인의 영업으로 인한 사실상의 이익은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영업권에 대한 독립적인 압류 · 환가 등 강제집행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또한 영업권은 영업재산과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일체로서의 기능적 재산인营业을 구성하는 것이므로,營業을 떠난 영업권 자체는 강제집행의 방법으로 압류하여 환가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

(2) 별지 목록 기재 사업허가권, 영업권이 영업재산과 일체로서 양도되어 압류 · 환가가 가능한지 여부

영업은 일정한 영업 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적 재산이므로,营业을 구성하는 유형·무형의 재산과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사실관계가 서로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수익의 원천으로 기능하고, 하나의 재화와 같이 거래의 객체가 된다. 그리고 여러 개의 부동산, 유체동산,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하여 일괄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므로(민사집행법 제98조 제1항, 제2항, 제197조 제1항, 제251조 제1항 참조), 영업재산에 대하여 일괄하여 강제집행이 될 경우에는 사업허가권, 영업권도 일체로서 환가될 수 있다. 따라서 채무자가 영업재산과 사업허가권, 영업권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일체로서의 营业을 양도함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것을 심화시킨 경우, 그 영업양도는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된다. 나아가 위와 같은 영업양도 후 종래의 영업조직이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로서 기능하면서 동일성을 유지한 채 채무자에게 회복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 채권자는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보전채권액을 한도로 하여 영업재산과 영업권이 포함된 일체로서의 营业의 가액을 반환하라고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3다84162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피고 C이 피고 B으로부터 사업의 물적 시설 등을 포함하여 사업허가권, 영업권, 영업재산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일체로서 이를 양수하였는지 보건대,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양도양수계약의 대상은 별지 목록 기재 영업권 및 사업허가권으로서 허가권을 제외한 영업권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재산을 의미하는지와 그 양도방법은 무엇인지가 특정되지 않은 점, 피고 C이 피고 B으로부터 사업장의 부지나 건물의 임차권, 시설, 인적조직 등을 양수받았다는 자료가 전혀 제출되어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 사이에 영업재산과 사업허가권, 영업권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일체로서의 영업양도양수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또한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보전채권액을 한도로 하여 영업재산과 영업권이 포함된 일체로서의 营业의 가액을 반환하라고 청구할 수 있는바, 그 영업권의 가액이 원고의 채권인 피보전채권액을 초과한다고 볼 자료도 없다).

다. 소결론

결국 별지 목록 기재 영업권 및 사업허가권은 독립하여 압류·환가 등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위 영업권, 사업허가권이 물적 시설 등을 포함하여 영업재산 전체로서 일괄하여 양도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영업재산과 일체로서 환가될 수도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채권자취소청구 및 가액배상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 및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영범

별지

영업권 및 사업허가권의 표시

양도인 : B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양수인 : C (주민등록번호 2 생략)

상호 : E

사업장소재지 : 부산 남구 F 외 2필지

사업의 종류

업태 : 제조업	종목 : 산업용 가스 제조업
제조업	고분자화합물
도매 및 소매업	액화석유가스, 고압가스, 의약품
도매 및 소매업	무역
서비스	의료용산소운반

사업허가권

허가번호 G(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고압가스 판매사업, 고압가스 운반자 등록)

허가번호 H(고압가스충전사업)

- 1)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을 기재하지 않은 오기로 보이나, 청구를 기각하는 이상 그대로 기재한다.